

PATHWAY HOME 프로그램 신청자 양해 각서 (Korean)

프로그램 신청자 이름: _____

Pathway Home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가 자격을 갖추었으며, 친척 또는 친구의 거주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 뉴욕시(이하 “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를 놓은 해당 가구원 또는 주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월 지급 의무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는 가구원(“1 차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시가 1 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Pathway Home 월 임대료”라고 합니다.

본인이 Pathway Home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이 프로그램에 적합함을 시 당국에 통보한 후 시가 승인하는 Pathway Home 월 임대료 지급액을 확인할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의 Pathway Home 월 임대료는 본인의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최장 12 개월 동안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본인이 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한, 시에서 최대 1 년까지 1 차 거주자에게 직접 Pathway Home 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이해합니다.
3. 본인은 본인에게 자격이 부여된 모든 근로 지원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근로 지원에는 근로소득 세금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아동 세금공제(Child Tax Credit, CTC), 자녀양육비 세금공제(Child Care Tax Credit, CCTC) 등과 같은 공공 혜택과 세금 공제가 포함됩니다.
4. 본인은 1 차 거주자로부터 거주지 열쇠를 받을 것을 이해합니다.
5. 주소가 변경될 경우, 뉴욕시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에 통보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6. 본인은 거주지에 새로운 동거인이 생길 경우, 반드시 HRA 에 929-221-0043 번으로 즉시 전화해 통보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본인이 **Pathway Home**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약속합니다 (계속):

7. 본인은 호스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해당 가족 구성원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당국이 Pathway Home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이해합니다.
8. 직업 소개와 금융 상담(에만 국한되지 않고)을 포함해 본인의 영구 주택 마련을 위한 구직 활동에 적합한 모든 서비스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9. 적절한 사유 없이 해당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시 당국이 1 차 거주자에게 선 지급한 Pathway Home 월 임대료는 시에 반환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10. Pathway Home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하여 시에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11. 본인은 본인이 호스트 가족이 승인한 거주지를 떠나는 경우 Pathway Home 월 임대료 지급이 종료됨을 이해합니다.
12. 아래 서명한 케이스 관리자 또는 주거 전문가가 서명으로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명하였음을 이해합니다.

필수 서명:

이 신청자 양해 각서의 의무를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원 서명

날짜

가구 구성원 서명

날짜

STAFF USE ONLY

I confirm that all present household members have verbalized their understanding to the agreements outlined in this document, and that all household members have signed and received a copy of this agreement.

Case Manager or Housing Specialist

Date